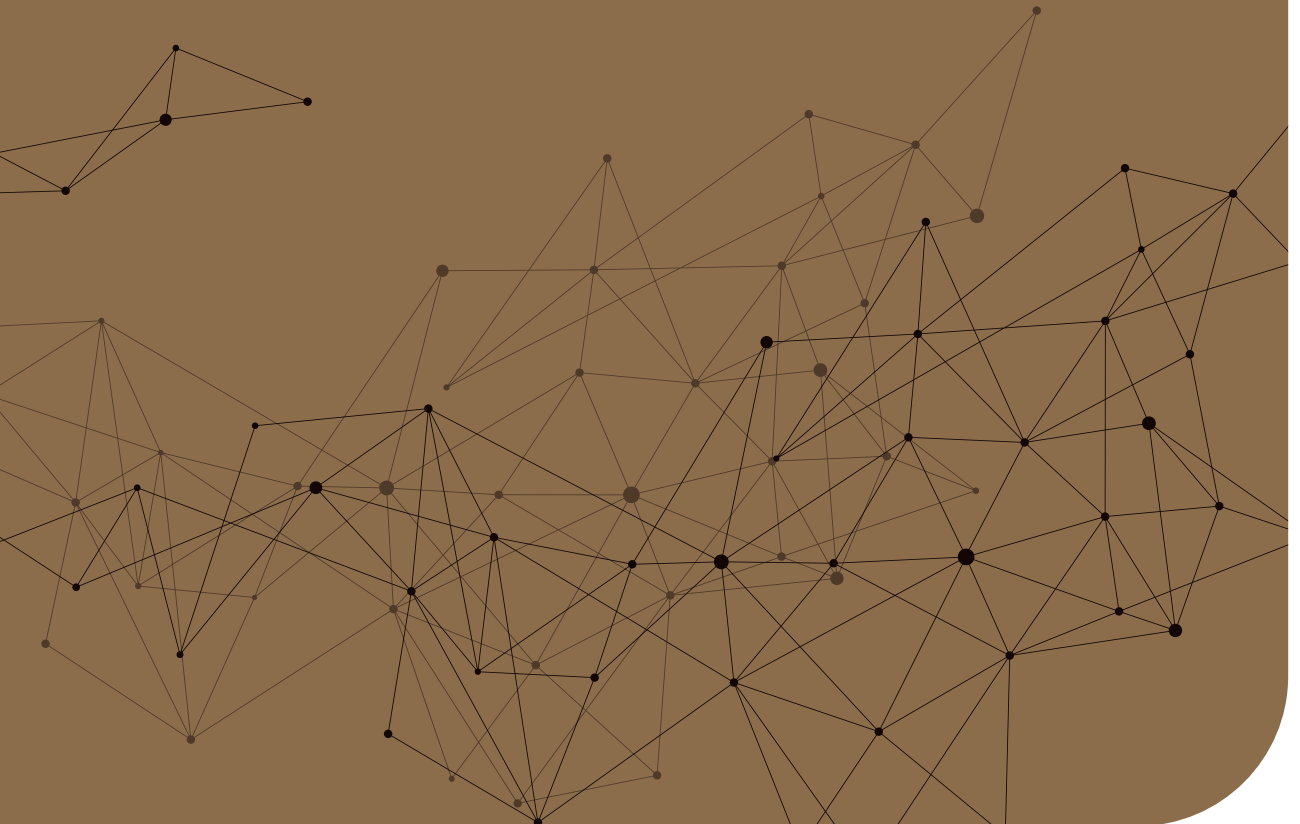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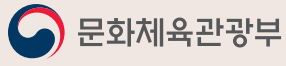


공공기관 전자문서 제공 안내서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는?



점자법에는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시각장애인이 점자 문서를 요청했을 때
점자 문서를 제공하는 방법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안내서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디딤돌이 되어
시각장애인의 언어권 신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점자 기본 상식

1 점자란 무엇인가요?

점자는 여섯 개의 돌출된 점으로 구성된 문자 체계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문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단추나 지하철 계단 손잡이 등에서 점자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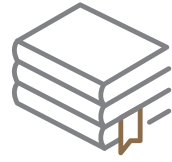
1	● ●	4	←상단
2	● ●	5	←중단
3	● ●	6	←하단

2 점자가 왜 필요한가요?

시각장애인은 촉각으로 사물을 인지하고 정보를 습득합니다. 따라서 손으로 촉지할 수 있는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3 점자에도 표기법이 있나요?

6개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형의 수는 점이 하나도 찍히지 않은 점형을 제외하면 총 63가지입니다. 63가지의 점형으로 한글,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문자와 기호를 표기해야 하므로 각 분야마다 정해진 표기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한국점자규정」에 따라 점자를 표기합니다.



4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는 같나요?

점자는 프랑스의 시각장애인 루이 브라유가 창안한 6점식 점자 체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6점식 점자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되지만 표기 규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고시한 「한국점자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5 점자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나요?

세계적으로 1800년경부터 점자를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도 1800년대 말부터 시각장애학생 교육에 점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1923년 송암 박두성 선생이 제자들과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 점자를 연구하였고 1926년 11월 4일 훈맹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로 점자법에 따른 법정 기념일입니다.

6 점자 관련 자격이 있나요?

점자 관련 자격으로는 점역·교정사가 있습니다. 점역·교정사는 보건복지부 공인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운영하며, 점역 또는 교정 가능한 과목 유형 및 숙련된 과목 수에 따라 1, 2, 3급으로 분류합니다.

- 3급: 점역교정사 검정과목 '국어'에 합격한 사람
- 2급: 3급을 소지한 자로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중국어, 일본어 중 1개 과목에 합격한 사람
- 1급: 3급 소지자가 2급에 해당하는 과목 중 2과목 이상 합격한 사람 (다만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한다)

점자 문서 제공 방법

1 관련 근거: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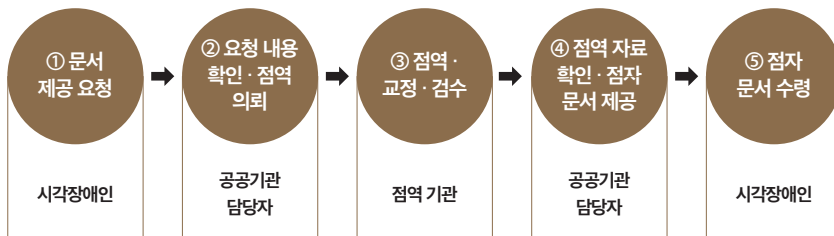
-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대상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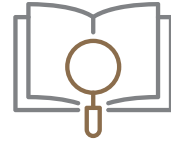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으로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제공 절차



※ 점자 문서를 제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점자 문서를 요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① 문서 제공 요청: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제공을 요청합니다.
- ② 요청 내용 확인 · 점역 의뢰: 공공기관 담당자가 시각장애인이 요청한 일반활자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관 내부에서 점역이 가능한 경우는 기관 내부에서 점역을 하고, 점역이 어려운 경우 점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 출판시설*에 점역을 의뢰합니다.(13~14쪽의 점자 관련 기관 목록 참고)

***점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 출판시설 기준: 점자법 시행령 제4조제2항**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 · 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 ③ 점역 · 교정 · 검수: 점역을 의뢰 받은 기관은 '점역 ⇨ 교정 ⇨ 검수' 순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점자 문서의 마지막에 점역자, 교정자, 검수자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 ④ 점역 자료 확인, 점자 문서 제공: 공공기관 담당자는 점역 기관에서 완료한 점자 문서를 최종 확인하고 점자 문서 제공을 요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합니다.
- ⑤ 점자 문서 수령: 시각장애인이 점자 문서를 수령합니다.

점자 문서 제공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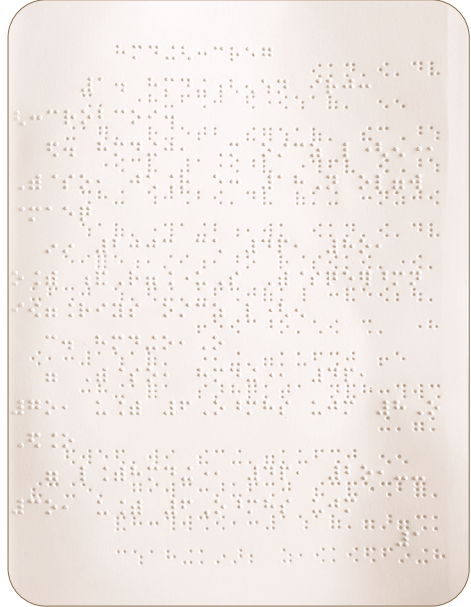


일반할자 문서

투표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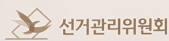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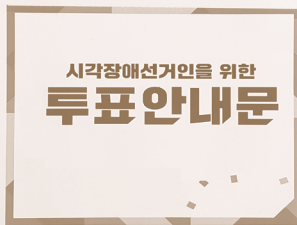
1. 투표참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 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 *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나. 투표일시
- 선거일 투표 : 4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사전투표 : 4월 2일 ~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다. 투표장소 : 선거관리위원회 결정하여 공고한 장소
- * 투표장소는 매세대에 송부되는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증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차량 및 휠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라. 투표하러 갈 때 가지고 가야할 것 :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학생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하나를 꼭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 마. 투표소 방문 시 주의사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투표소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투표소에서는 거리두기, 발열체크, 손소독, 비닐장갑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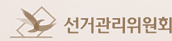
일반할자 문서

2021년 4월 7일 실시
전라남도의회원보궐선거



점자 문서

2021년 4월 7일 실시
전라남도의회원보궐선거



점자 문서 제공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문 제공하는 점자에 민감한 개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일반활자 문서 제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비식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식별화를 하여 점자 문서를 제공합니다.

문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요청하는 일반활자의 문서량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많은 양의 문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 당사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나요?

답 점자 문서 종류는 다양하여 표준 서식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점역자료 출판지침을 참고하여 점자 자료로 변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특별한 사유 없이 점자 문서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 조항이 있나요?

답 점자법에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요청하는 점자 문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세금 안내문, 청구서, 고지서, 은행 상품 설명서, 약관, 금융정보 안내서, 건강 관련 안내서, 건강 검진표, 기내 안전 브리핑 카드, 안전 관련 안내문, 재난 대응 매뉴얼, 민원 서식, 민원 안내서, 복지 서비스 안내서, 도·시·구청 소식지, 범죄 피해 안내서, 권리고지서, 사건 처분 결과 통지, 관광 가이드북, 안내 책자, 전시, 공연 안내 리플릿, 각종 제품 점자 표기 및 설명서, 대학 모집 요강, 대학 증명서, 도의회 회의록, 경영 성과보고서, 경찰 공무원증, 시내버스 노선 안내 등

*스티커: 바우처카드, 지역 화폐 카드 점자 스티커, 복약 안내 점자 스티커

문 전자 점자 문서 파일은 어떻게 읽습니까?

답 점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점자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점자 정보 단말기를 통해 점자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점자 관련 문의처

| 정부 기관 |

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점자법, 점자 업무 총괄 전화. 044-203-2538

2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점자 규정 관리, 점자 사용 문의 전화. 02-2669-9696

3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전화. 02-590-6266

4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정책팀

점자 교과서 제작 보급 전화. 041-537-1533

5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학령기 시각장애인 교육 총괄 전화. 044-203-6569

| 단체 |

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관련 민간 대표 단체 전화. 02-799-1000

2 (사)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전국 38개 시각장애인도서관 협의체 전화. 070-4132-5491

제7항 한국 점자의 물리적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점 높이:

반구형 점의 중심점에서 밑면까지의 거리

2 점 지름:

반구형 점의 밑면 중심을 지나 점의 둘레와 만나는 직선거리

3 점간 거리:

점간 내 한 점의 중심점에서 인접한 다른 점의 중심점까지의 거리

4 자간 거리:

수평으로 나열된 두 점간에서 같은 점 번호에 해당하는 두 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

5 줄간 거리:

수직으로 나열된 두 점간에서 같은 점 번호에 해당하는 두 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

6 한국 점자 사용 규격

가. 점 높이: 최솟값 0.6mm 최댓값 0.9mm

나. 점 지름: 최솟값 1.5mm 최댓값 1.6mm

다. 점간 거리: 최솟값 2.3mm 최댓값 2.5mm

라. 자간 거리

종이, 스티커: 최솟값 5.5mm 최댓값 6.9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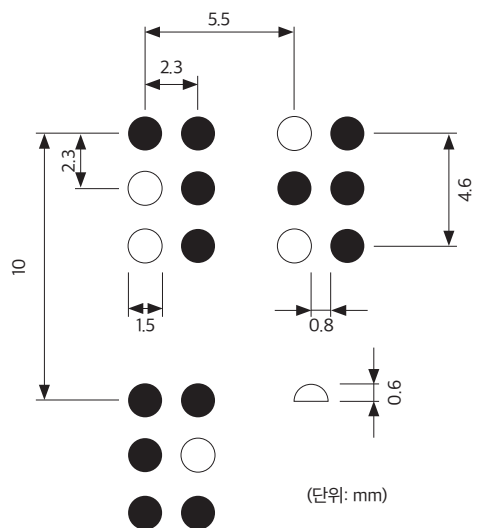
피브이시(pvc): 최솟값 5.5mm 최댓값 7.3mm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최솟값 5.5mm 최댓값 7.6mm

기타 재질: 위의 규격을 준용하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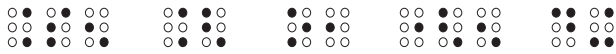
마. 줄간 거리: 최솟값 10.0mm 최댓값 정하지 않음

바. 점자 규격 그림(예시)



점자 일람표

점자규격 읽기형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쓰받침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ㅗ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연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10	수표11		
문장부호	!	?	.	,	-	~(—)	*	“ ”	‘ ’	/					
	:	가운뎃점(.)	말줄임표(...)		말줄임표(...)		소괄호()		대괄호[]		화살표←				
영	영어시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포스트로피,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 지, 초, 쓰, 쑈, 다음에 약자 영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한국시각장애연협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제공>

점자 관련 기관 목록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소속 점자도서관 목록

도서관명	주소	전화번호
강원점자도서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강원도사회복지회관 1층 102호 강원점자도서관 (24209)	033-262-1920
해밀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10번길 4 (14575)	032-650-4600
한마음점자도서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7 (13508)	031-725-9532
경기도시각장애인도서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57번길 27-4 경기도시각장애인도서관 (16321)	031-213-5045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점자도서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백천로 39 (14091)	070-8978-8859
경기북부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301호(11780)	031-871-0445
경남점자정보도서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7길 59 (51759)	055-241-0023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경산캠퍼스 점자도서관 (38453)	053-850-5481
경북점자도서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05(37581)	054-277-2999
광주점자도서관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82번길 6 (61639)	062-672-9534
달구벌점자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0 (42635)	053-526-9078
대구점자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414 (42818)	053-256-8877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문화동) (35020)	042-270-7420
대전점자도서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10 한밭도서관 별관1층(35020)	042-252-0055
부산점자도서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72번길 9, 1층 부산점자도서관(46938)	051-302-9010
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3 (06335)	02-451-6000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645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 (05275)	02-440-5200
한국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4가길 32 (05242)	02-3426-7411
강서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6 나인스퀘어 8층 801~3호 (07806)	02-2661-2280
실로암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실로암점자도서관(08757)	02-880-0670
서울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35, 702호(01767)	02-935-9696
마포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3 마포장애인복지회관 2층 (03953)	02-338-0180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78-19, 2층 (03618)	02-393-4568
IT로 열린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6 이삭빌딩 301호(06705)	02-3471-3434
성북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5가길 20 (02829)	02-923-4555(내선: 223)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19길 27 (05601)	02-422-8108
한국학생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31-1 (03031)	02-880-0610

LG상남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 1길 18 LG상남도서관 (03057)	02-708-3700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51(성수빌딩 2층) (44676)	052-256-3308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22 (22511)	032-760-4101
송암점자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105-19 (22206)	032-876-3504
전라남도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전라남도 목포시 미항로 19, 3층 (58749)	061-283-6969
전남점자도서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3 힐링타워 4층 (58615)	061-284-6333
전라북도점자도서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학산길 26-3 (54881)	063-288-0046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6, 2층 (63213)	064-723-7777
제주점자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복로 433 (63311)	064-710-1200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02 2층 (31139)	041-578-4051
무지개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505호 (28583)	043-237-5544

시각장애인복지관 목록

도서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건물 4층	031-856-5300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선안로 175 (대도동)	054-253-5900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382번길 6 (사동)	062-652-2200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100 (용산동)	053-526-9988
대전시립산성복지관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232 (산성동 20-18)	042-586-8033~4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32번길 38 (구포동)	051-338-0017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구면천로 645 (상일동 137)	02-440-520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9	02-880-0500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8 (상계6.7동 771번지)	02-950-0114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5가길 20 (동선동4가)	02-923-4555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9길 27 (삼전동)	02-422-8108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114번길 3 (달동)	052-256-5244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105-19 (학익동)	032-876-3500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복로 433 (월평동)	064-710-1200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13 (삼룡동)	041-413-7000

